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3월 03일 06시 25분



목차

목차	2
자동차등록	3
종 류	3
발급 및 열람신청	3
구비서류	3
1건당 수수료	3
기 타	3

자동차등록	건설기계등록	이륜차신고	과태료	취득 등록면허세
검사/의무보험	자동차등록현황	민원서식	자주하는 질문	오시는 길

- 이전등록 ▪ 변경등록 ▪ 신규등록 ▪ 말소등록 ▪ 저당권설정/말소등록 ▪ 임시운행허가
- 등록증(번호판)재발급 ▪ **등록원부발급** ▪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

종 류

-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: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주요사실(압류등)기재
-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: 당해 자동차의 저당권에 관한 기록

발급 및 열람신청

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자동차등록원부 등본(초본)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(초본) 발급 및 열람시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끝 여섯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.

구비서류

- 자동차등록원부 신청서
- 신청인 신분증

1건당 수수료

구분	금 액
발급	300원
열람	100원

기 타

- 전국 차량등록사업소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.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-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.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